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 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6.5.7)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6.4.30)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증권계좌를 제출한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물증권 보유 주주 및 증권계좌 미제출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 5영업일 전(2026.4.30)까지 당사에 소유중인 실물증권 및 증권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 시행일(2026년 5월 7일)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6년 4월 6일

주식회사 케이엠에프

대표이사 정용진

